

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(제9조의3 관련)

I. 일반기준

1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2.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3. 처분권자는 사고 등의 발생 사유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 - 가. 사유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나.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다.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
II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	
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1. 시설이 붕괴된 경우	법 제20조의2 제1항제1호	3개월 운영 중지	
2. 시설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	법 제20조의2 제1항제1호	2개월 운영 중지	3개월 운영 중지
3.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	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	2개월 운영 중지	3개월 운영 중지
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·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	법 제20조의2 제1항제3호	2개월 운영 중지	3개월 운영 중지
5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	법 제20조의2 제1항제4호	2개월 운영 중지	3개월 운영 중지